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22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참고사항	3
V . 검토의견	4
1.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 의3 및 제73조의4)	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

다. 회 부 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도 성인지 예·결산제도처럼 예산과 기금의 중·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IV.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V. 검토의견

1.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의 원칙에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항 규정 -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가 포함된 인구인지 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가 포함된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 및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 설치,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정 등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이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산의 원칙에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별도의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 및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및 인구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임.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제도”¹⁾가 도입되어

2008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²⁾가 도입되어 2023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지 예·결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성평등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이에 개정안도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³⁾은 2023년 0.72명⁴⁾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72년에는 3,622만명(1977년 수준)으로 감소하며, 출생아 수는 2022년 현재 25만명에서 2072년 16만명(2022년의 6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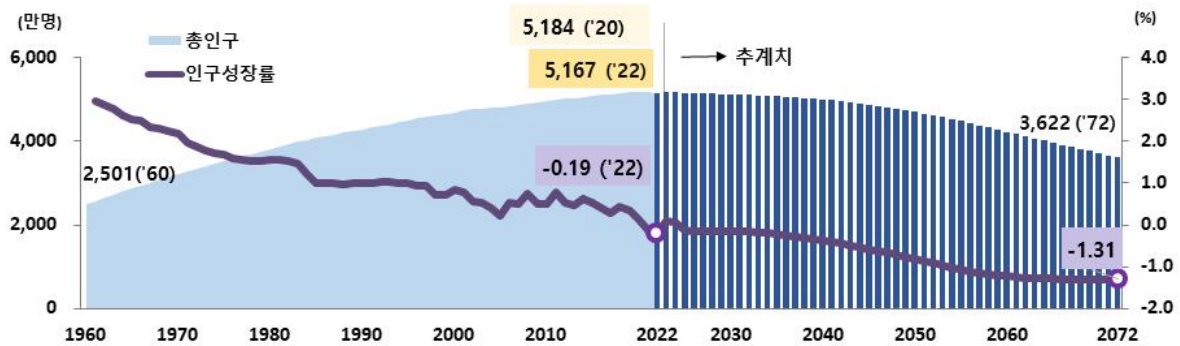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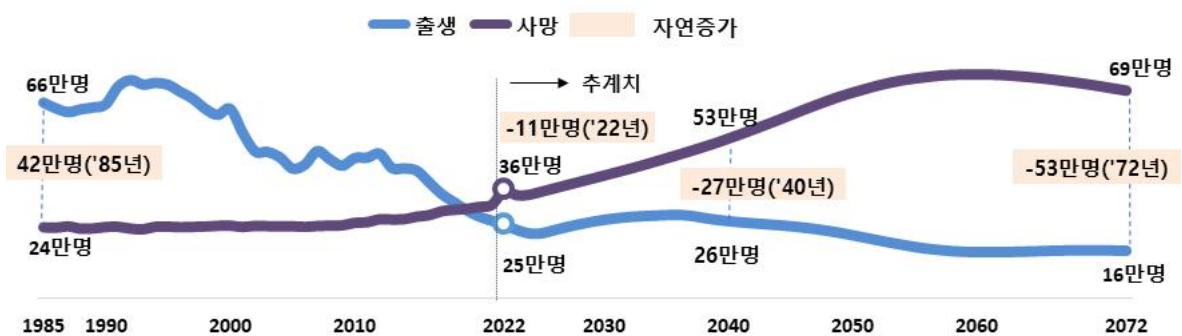
3)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의 수

4)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1.19명)과도 격차가 있음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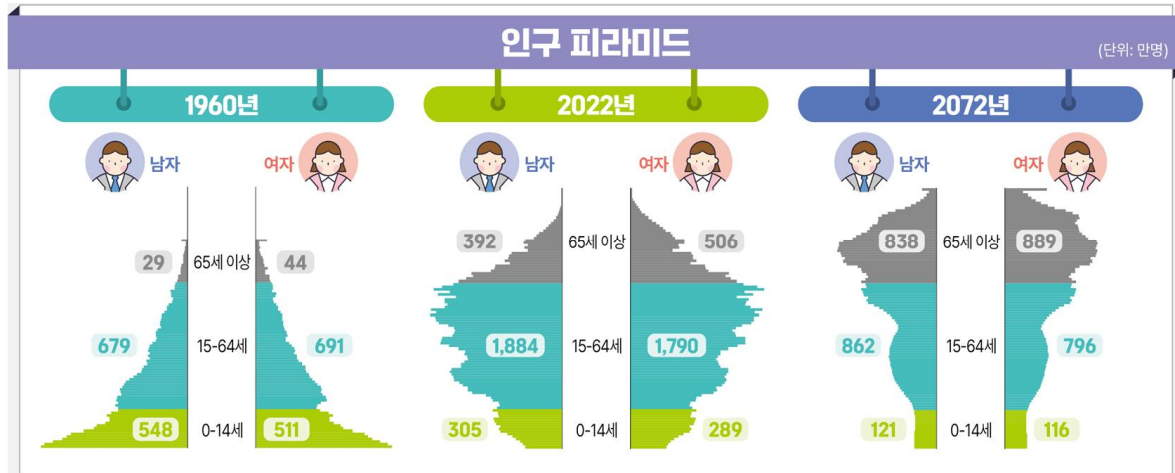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1985~2072년)]



※ 자료: 통계청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현재 3,674만명에서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현재 898만명에서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하여, 인구피라미드가 2022년 기준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에서 2072년에는 60세 이상이 점차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인구 피라미드(1960~2072년)]



※ 자료: 통계청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교육·안보 등의 각 분야에서 산업별 인력수급 부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인프라 붕괴, 상비병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우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입규모 감소와 지출수요의 증대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적정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계획을 수립⁶⁾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계획과 함께 인구인지 예·결산서를 연계할 경우 인구증감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인구증감에 관한 재정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개정안은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및 인구영향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정책담당관 지정 및 전담부서 설치 권고 등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설 제도 역시 인구인지 예·결산제도와 함께 기존의 인구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기금이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삭제 <2008. 2. 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구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과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연구 및 인구인지 예·결산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기 도입된 성인지 예·결산제도 및 최근 도입된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를 지켜보고 추가적인 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⁷⁾⁸⁾

7) 기획재정부도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구인지 예·결산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생·고령화·다문화 및 주거·일자리·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걱정 범위의 설정이 곤란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하여 저출생 대응 사업에 대한 예산사전심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인구 관련 제도의 도입을 지켜본 후 이들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인구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호)」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이하 “저출생 관련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안 및 예산요구서를 조정 및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 정관리계획 3. ~ 5. (생략) ④ ~ ⑪ (생략)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73조의5----- -----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 설></u>	제16조(예산의 원칙)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 여부를 포함하여 예산이 인 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 응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 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7조의2(인구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 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

현행	개정안
	<u>고서(이하 “인구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② <u>인구인지 예산서에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③ <u>정부는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인구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u> ④ <u>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인구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인구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u>국공립 연구기관</u>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현 행	개 정 안
	<u>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인구정책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u> ⑤ <u>정부는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위하여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정책담당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1. <u>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및 관리</u> 2. <u>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성과 및 지표 관리</u> 3. <u>인구영향평가기관 지원</u> 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⑥ <u>인구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인구영향평가기관,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9의2. (생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신설>	9의3. <u>인구인지 예산서</u>

현행	개정안
10. ~ 16. (생략) <u><신설></u>	10. ~ 16. (현행과 같음) <u>제57조의3(인구인지 결산서의 작성)</u> ①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구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시한 인구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u><신설></u>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 ----- ----- ----- ----- ----- ----- ----- ----- 제68조의4(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현행	개정안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기금 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가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인구영향평가기관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인구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위하여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된 인구정책담당관과 실무담당자와 전담부서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u>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 사업 선정 및 관리</u> 2. <u>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 사업 성과 및 지표 관리</u> 3. <u>인구영향평가기관 지원</u> 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⑥ <u>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및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인구영향평가기관,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 ----- ----- ----- ----- ----- ----- ----- -----.
1. ~ 6의2. (생략) <u><신 설></u>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생략) <u><신 설></u>	<u>6의3.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u> 7. (현행과 같음)
	<u>제73조의4(인구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u>

현 행	개 정 안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구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생략)	제73조의5(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현행 제73조의4와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

